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재정경제부

대통령령 제17461호 (2001.12.31)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①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사

②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 법령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접합 또는 납땜임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③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그밖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법 제20조의2제3항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화의 공급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2.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3.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서 그 밖의 증빙

서류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용부탄(이하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에게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6. 가정용부탄을 제2항의 용도외의 용도로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⑤법 제2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상당 가산액”이라 함은 1일당 1만분의 5의 율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특별소비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2. 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시한) 제19조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특별 소비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34조의2(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①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 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자 <p>②법 제20조의2제1항에서 “취사난방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 법령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식 부탄연소기용으로 사용되는 것과 접합 또는 납땀용기용으로 사용되는 것 <p>③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 또는 환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세금계산서 그밖에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④법 제20조의2제3항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화의 공급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

현행	개정안
	<p>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p> <p>2.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p> <p>3. 동일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이중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p> <p>4.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만,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것으로서 그 밖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5.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용부탄(이하 “가정용부탄”이라 한다)을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에게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p> <p>6. 가정용부탄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용도로 판매하고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p> <p>⑤법 제20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상당 가산액”이라 함은 1일당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p> <p>⑥법 제2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특별소비세액을 추징당한 경우</p> <p>2. 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추징된 세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p>